의안번호	2209223
의 뢰 인	서삼석 의원
회 답 일	2025. 3. 26.
추계번호	25G180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농어민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비용추계 결과

❑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,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,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, 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, 소득세,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2026년 3조 407억원, 2031년 6,892억원 등 2026년에서 2031년까지 6년간 총 20조 464억원(연평균 3조 3,411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31년, 소득세, 법인세, 부가가치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(안 제72조)	-	-3,620	-3,738	-3,859	-3,984	-4,114	-19,315	-3,863
조합 출자금 비과세 적용기한 5년 연장(안 제88조의5)	-282	-507	-507	-507	-507	-225	-2,534	-422
조합 예탁금 저율과세 적용기한 5년 연장(안 제89조의3)	-3,192	-5,745	-5,745	-5,745	-5,745	-2,553	-28,724	-4,787
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5년 연장(안 제105조제1항 제5호 및 제6호)	-26,933	-28,374	-29,894	-31,498	-33,190	-	-149,888	-29,978
합계	-30,407	-38,246	-39,884	-41,609	-43,426	-6,892	-200,464	-33,411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2조 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)	○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5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30.12.31.	
2	안 제88조의5 (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)	○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5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30.12.31.	-

3	안 제89조의3 (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)	○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적용기한 5년 연장 –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30.12.31.	–
4	안 제10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(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)	○ 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기한 연장 –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30.12.31.	–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72조 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)	○	
2	안 제88조의5 (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)	○	
3	안 제89조의3 (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)	○	
4	안 제10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(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❑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

○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6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고 가정하며, 징수기준을 적용하여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추계

– 개정안에 따른 2026년 법인세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감소 효과는 징수기준으로 2027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가정

○ 향후 과세표준 구간별 조합법인의 분포는 2023년 신고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

- 조합법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조합법인 과세특례를 적용한 경우와 일반법인의 법인세율 체계를 적용한 경우의 산출세액 차이를 기준으로 산출
- 조세지출예산서상 실적을 추계에 활용하되, 2022년 세법개정에 따라 일반법인의 세율이 인하되었음을 감안하여 2023년 이전 감면실적을 현행 세율에 맞춰서 조정하여 활용

  ※ 단, 2023년 조합법인의 중간예납분은 직전연도 세액의 절반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산출되었다고 가정

○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최근 5년간의 감면실적의 증가추세가 유지된다고 가정

- 최근 5년(2020~2024년)간의 조정실적의 증가 추세가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
❑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

○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하여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

○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관련 조세지출의 최근 2년 평균 실적규모를 바탕으로 하여 2026년부터 2031년까지의 세수효과 추계

- 조합 등 출자금 및 예탁금의 향후 규모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조세지출의 최근 2년(2023~2024년) 평균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
- 개정안에 따른 비과세 및 저율과세 적용기간 변화로 인해 현행 대비 적용 세율의 변화가 발생하는 기간(2026~2031년)에 대하여 세수효과 추계

❑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

○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하여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

○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일몰 관련 조세지출의 최근 2년 평균 실적규모를 바탕으로 하여 2026년부터 2031년까지의 세수효과 추계

- 조합 등 출자금 및 예탁금의 향후 규모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조세지출의 최근 2년(2023~2024년) 평균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

- 개정안에 따른 비과세 및 저율과세 적용기간 변화로 인해 현행 대비 적용 세율의 변화가 발생하는 기간(2026~2031년)에 대하여 세수효과 추계

❑ 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

○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6년부터 세수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
○ 전체 조세지출액에서 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 실적 및 어업용 기자재 실적을 구분하고, 각각의 최근(2019~2023년) 추세를 반영해 향후 조세지출액을 추정

- 영세율에 따른 조세지출액(징수 기준)은 농·축산·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 분이 모두 포함된 자료로, 세부 항목을 각각 구분할 수 없음
- 영세율 대상으로 신고된 공급가액 자료(신고 기준)는 최종 조세지출액을 나타내는 자료는 아니나, 농·축산·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 분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조세지출액에 반영함

3. 상세 추계내역

가.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

(1) 제도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

❑ (제도개요) 농업협동조합·수산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산출시 일반법인과 달리 당기순이익 과세를 적용하여 세무조정을 간소화하고, 저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특례

○ 일반법인과 달리 조합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산출시 당기순이익에서 기부금, 접대비 등 8가지 항목만을 손금불산입하고, 9~12%의 저율과세 적용

[표 2] 일반법인과 조합법인 과세체계 비교

<table>
<tr><th colspan="2"></th><th>일반법인</th><th>조합법인</th></tr>
<tr><td colspan="2">적용대상</td><td>일반법인</td><td>농업협동조합, 수산업협동조합, 신용협동조합, 새마을금고, 중소기업협동조합, 산림조합, 엽연초생산협동조합, 소비자생활협동조합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과세표준</td><td>당기순이익
+익금산입 - 익금불산입 - 손금산입
+손금불산입
=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
-이월결손금 - 비과세소득 - 소득공제
= 과세표준</td><td>당기순이익
+손금불산입(기부금 등 8개항목[1])
= 과세표준</td></tr>
<tr><td rowspan="5">과표
구간별
세율</td><td>2억원 이하</td><td>9%[2]</td><td rowspan="2">9%</td></tr>
<tr><td>2~20억원</td><td rowspan="2">19%[2]</td></tr>
<tr><td>20~200억원</td><td rowspan="3">12%</td></tr>
<tr><td>200~3,000억원</td><td>21%[2]</td></tr>
<tr><td>3,000억원 초과</td><td>24%[2]</td></tr>
</table>

주: 1) 기부금, 접대비, 대손금, 대손충당금, 과다경비, 업무무관비용, 지급이자,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
2) 2022년 세법개정 이전에는 각각 1%p씩 상향된 세율 적용

❑ (특례실적)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실적은 2020년 3,271억원 수준에서 2023년 5,113억원으로 증가한 후, 2024년 3,289억원 수준

○ 2024년 실적 감소는 법인 실적의 부진 외에도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일반법인의 세율 인하가 2023년 귀속소득부터 반영된 결과

[표 3]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실적: 법인세

(단위: 억원)

	2020	2021	2022	2023	2024(잠정)
과세특례 실적	3,271	3,347	4,230	5,113	3,289
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년도

(2) 추계방법

❑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우선 2020~2023년간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실적을 조정한 후, 2020~2024년간 조정실적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향후 세수효과 추정

○ 2023년 법인세 신고자료 기준 과표구간별 조합법인의 특례실적은 다음과 같음

[표 4] 조합법인의 과표구간별 과세표준, 세율 및 산출세액: 2023년 신고기준

과표구간별	법인수 (개)	과세표준 (억원)	과세특례 적용		과세특례 미적용		세수효과 (A−B)
			세율 (%)	산출세액 (A,억원)	세율[1] (%)	산출세액 (B,억원)	
합 계	4,215	59,145	−	6,053	−	11,167	−5,113
2억원 이하	1,181	618	9	56	10	62	−6
2~20억원	2,273	19,307		1,740	20	3,407	−1,666
20~200억원	753	37,307	12	4,032		7,311	−3,279
200~3,000억원	8	1,913		225	22	387	−162

주: 1) 2023년 신고분은 2022년 귀속소득을 기반으로 신고됨에 따라 세법개정 이전의 세율이 적용되며, 중간예납분은 직전연도 기준으로 산출되었다고 가정
자료: 국세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○ 2023년 과표구간별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일반법인의 세율인하에 따른 특례실적을 조정

– 2023년 자료를 바탕으로 법인세 과표구간별 1인당 과세표준을 통해 세법개정 전후의 일반법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특례 미적용시 산출세액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

[표 5] 2022년 세법개정 효과에 따른 특례 미적용시 산출세액 조정내역: 2023년 신고기준

과표구간별	법인수 (A,개)	과세표준 (B,억원)	1인당 과세표준 (C=B/A, 억원)	특례 미적용시					
				'22년 세법개정 효과 조정전			'22년 세법개정 효과 조정후		
				세율 (D,%)	산출세액		세율 (D',%)	산출세액	
					1인당 (E=C×D, 억원)	전체 (F=E×B, 억원)		1인당 (E'=C×D', 억원)	전체 (F'=E'×B, 억원)
합 계	4,215	59,145	−	−	−	11,167	−	−	10,577
2억원 이하	1,181	618	0.5	10	0.05	62	9	0.04	56
2~20억원	2,273	19,307	8.5	20	1.6	3,407	19	1.5	3,215
20~200억원	753	37,307	49.5		10.5	7,311		10.0	6,938
200~3,000억원	8	1,913	239.1	22	55.0	387	21	52.3	368

자료: 국세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– 이를 바탕으로 특례실적을 조정할 경우, 2023년 기준 11.5%의 실적이 하향 조정

[표 6] 조합법인 과세특례 실적 조정: 2023년 신고기준

(단위: 억원, %)

	특례적용시 산출세액(A)	특례 미적용시				실적조정율 ([C−E]/C)
		'22년 세법개정 효과 조정전		'22년 세법개정 효과 조정후		
		산출세액(B)	특례실적 (C=A−B)	산출세액(D)	특례실적 (E=A−D)	
산출세액	6,053	11,167	−5,113	10,577	−4,524	−11.5

자료: 국세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– 2023년 기준으로 2020~2023년간 감면실적을 조정하여 살펴보면, 최근 5년간 특례실적은 연평균 3.2% 증가함

[표 7]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실적 조정: 2020~2024년

(단위: 억원, %)

		2020	2021	2022	2023	2024 (잠정)	연평균 증가율 ('20~'24년)
특례 실적	조정전(A)	3,271	3,347	4,230	5,113	3,289	–
	조정후 (A×[1−11.5%])	2,894	2,961	3,743	4,524	3,289[1)]	3.2

주: 1) 2024년 실적은 세법개정이 적용된 2023년 귀속소득을 바탕으로 발생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추정

○ 향후 세수효과는 2024년 잠정실적에 최근 5년 연평균 감면실적의 증가율(3.2%)을 반영하여 추계

[표 8] 조합법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추정치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
세수효과	−3,620	−3,738	−3,859	−3,984	−4,114

(3) 추계결과

❑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, 법인세는 2027년 3,620억원,

2031년 4,114억원 등 2027년에서 2031년까지 5년간 총 1조 9,315억원 (연평균 3,863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9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7~2031년, 법인세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 (안 제72조)	−3,620	−3,738	−3,859	−3,984	−4,114	−19,315	−3,863

나.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5년 연장

(1) 조세지출 실적

❑ 조합 등의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관련 조세지출실적은 2020~2024년 연평균 634억원 수준이며 연도별로 증감이 반복되는 추세

[표 10] 조합 등의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관련 조세지출실적: 2020~2024년

(단위: 억원, %)

	2020	2021	2022	2023	2024[1)]	연평균[2)]
조세감면액	492	491	611	868	709	789
(증감률)	(△37.2)	(△0.2)	(24.4)	(42.1)	(△18.3)	

주: 1) 상반기 실적을 기반으로 한 정부 전망치
2) 2023~2024년 평균
자료: 기획재정부, 각 연도 「조세지출예산서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방법

❑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에 따른 향후 조세지출 규모는 최근 (2023~2024년) 평균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, 개정안에 따른 각 연도별 세율 변동폭을 감안하여 추계

○ 동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실적이 일정한 추세를 보이지 않고 변동적이므로 일몰연장 세수효과는 최근 2년 평균(789억원)을 기준으로 함

- 2024년 전망치에 2024년 상반기 실적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추계에 반영

○ 현재 조세지출 실적은 배당소득세율 14% 수준을 기준으로 하므로, 개정안

에 따른 각 연도별 세율 변동폭을 감안하여 추계

- 일몰연장으로 인한 세율 변동폭은 2026년 5%p, 2027~2030년 9%p, 2031년 4%p이며, 동 차이 만큼 세수효과 발생
- 개정안에 따르면 2026~2030년은 비과세이므로 세율 0%, 2031년은 5%, 2032년 이후는 9% 적용

[표 11]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연도별 배당소득세 세율

(단위: %, %p)

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	2032
현행(A)	5	9	9	9	9	9	9
개정안(B)	0	0	0	0	0	5	9
소득세율 변동폭(B-A)	△5	△9	△9	△9	△9	△4	0

○ 2023년~2024년 배당소득세율이 14% 수준일 때 평균 조세지출액이 789억원이므로, 세율 1%p 당 조세지출 실적으로 환산하면 56억원(789억원/14%)으로 볼 수 있음

- 소득세법 제129조(원천징수세율)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해 100분의 14 세율 적용

○ 따라서 상기 세율 1%p 당 조세지출 실적액에 각 연도별 세율 차이를 곱하여 세수효과 추정

(3) 추계결과

❑ 개정안에 따라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 적용기한을 2025년말에서 2030년말로 연장할 경우, 재정수입 감소는 2026~2031년 6년간 총 2,534억원(연평균 422억원)으로 예상

[표 12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조합 출자금 비과세 연장 (안 제88조의5)	-282	-507	-507	-507	-507	-225	-2,534	-422

다.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적용기한 5년 연장

(1) 조세지출 실적

❑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에 따른 조세지출 실적은 2024년 1조 1,647억원으로 2021~2024년간 연평균 52.7% 증가

[표 13]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적용 관련 조세지출 실적

(단위: 억원, %)

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[1]	연평균[2]
조세감면액	4,372	3,269	3,113	6,226	11,647	8,937
(증감률)	(△13.9)	(△25.2)	(△4.8)	(100.0)	(87.1)	

주: 1) 상반기 실적을 기반으로 한 정부 전망치
2) 2022~2024년 평균
자료: 기획재정부, 각 연도 「조세지출예산서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방법

❑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에 따른 향후 조세지출 규모는 최근(2023~2024년) 평균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, 개정안에 따른 각 연도별 세율 변동폭을 감안하여 추계

○ 동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실적이 일정한 추세를 보이지 않고 변동적이므로 일몰연장 세수효과는 최근 2년 평균(8,937억원)을 기준으로 함

- 2024년 전망치에 2024년 상반기 실적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추계에 반영

○ 현재 조세지출 실적은 이자소득세율 14% 수준을 기준으로 하므로, 개정안에 따른 각 연도별 세율 변동폭을 감안하여 추계

- 일몰연장으로 인한 세율 변동폭은 2026년 5%p, 2027~2030년 9%p, 2031년 4%p이며, 동 차이 만큼 세수효과 발생
- 개정안에 따르면 2026~2030년은 비과세이므로 세율 0%, 2031년은 5%, 2032년 이후는 9% 적용

[표 14]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연도별 이자소득세 세율

(단위: %, %p)

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	2032
현행(A)	5	9	9	9	9	9	9
개정안(B)	0	0	0	0	0	5	9
소득세율 변동폭(B-A)	△5	△9	△9	△9	△9	△4	0

○ 2023년~2024년 이자소득세율이 14% 수준일 때 평균 조세지출액이 8,937억원이므로, 세율 1%p 당 조세지출 실적으로 환산하면 683억원(8,937억원/14%)으로 볼 수 있음

- 소득세법 제129조(원천징수세율)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해 100분의 14 세율 적용

○ 따라서 상기 세율 1%p 당 조세지출 실적액에 각 연도별 세율 차이를 곱하여 세수효과 추정

(3) 추계결과

❑ 개정안에 따라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일몰 적용기한을 2025년말에서 2030년말로 연장할 경우, 재정수입 감소는 2026~2031년 6년간 총 2조 8,724억원(연평균 4,787억원)으로 예상

[표 15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조합 예탁금 저율과세 연장 (안 제89조의3)	-3,192	-5,745	-5,745	-5,745	-5,745	-2,553	-28,724	-4,787

라. 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5년 연장

(1) 제도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

❑ 동 제도는 비료, 농약, 사료, 기계 등 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내용

○ 적용대상은 비료[1], 농약[2], 경운기 · 트랙터 · 콤바인 등 농업기계, 양돈케이지 · 사료저장탱크 등 축산기계, 약제주입기 등 임업용 기자재, 어망 · 선박용 기관 등 어업용 기자재, 목초액 등 유기농어업자재 허용물질[3] 등임

❑ 최근 농·축산·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따른 전체 조세지출액은 2019년 1조 8,770억원, 2023년 2조 3,047억원 등으로 집계

○ 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로부터 발생한 금액과 어업용 기자재로부터 발생한 금액이 모두 포함된 자료임

[표 16] 농·축산·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지출액: 2019~2023년

(단위: 억원)

	2019	2020	2021	2022	2023
조세지출액	18,770	17,763	18,481	21,886	23,047

주: 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 영세율과 어업용 기자재 영세율에 따른 조세지출액이 모두 포함된 금액임
자료: 정부, 연도별 「조세지출예산서」

(2) 추계방법

❑ 영세율 대상으로 신고된 전체 기자재 공급가액을 기준으로, 최근 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 분의 비율은 2023년의 경우 96.4%, 어업용 기자재 분의 비율은 3.3% 수준으로 집계

1) 「비료관리법」에 따른 비료
2) 「농약관리법」에 따르거나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된 농약
3) 「농 · 축산 · 임 ·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」 별표에 따른 농업기계, 축산기계, 어업용기자재, 유기농어업자재 허용물질임

[표 17] 영세율 대상으로 신고된 기자재 공급가액 항목별 비율: 2019~2023년

(단위: %)

	2019	2020	2021	2022	2023
농·축산·임업용(제105조제1항제5호)	95.8	95.8	96.0	95.8	96.4
어업용(제105조제1항제6호)	4.2	4.0	4.2	3.6	3.3

주: 공급가액은 신고(귀속) 기준 금액이며, 최종적인 영세율 적용 대상 금액과는 차이가 있음
자료: 국세청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❑ 영세율 대상인 기자재 공급가액 자료를 반영하여, 전체 조세지출액을 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조세지출과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조세지출로 구분함

○ 매년 전체 조세지출액(농·축산·임업용 및 어업용)에 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 공급가액 비율 및 어업용 기자재 공급가액 비율을 곱하여 추정

[표 18] 최근 농·축산·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지출액(추정치): 2019~2023년

(단위: 억원)

	2019	2020	2021	2022	2023
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	17,976	17,048	17,697	21,092	22,275
어업용 기자재	794	715	784	794	772

❑ 최근 추세를 반영하여, 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시 조세지출액을 2030년 3조 2,418억원 등으로 추정

○ 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 조세지출액은 2019년 1조 7,976억원에서 2023년 2조 2,275억원으로 2019~2023년 5년간 연평균 5.5% 증가한 것으로 추정

[표 19] 최근 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지출액(추정치): 2019~2023년

(단위: 억원, %)

	2019	2020	2021	2022	2023	연평균 증감률
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 조세지출액	17,976	17,048	17,697	21,092	22,275	5.5

○ 향후 추계기간 조세지출 규모는 최근 조세지출액의 증감률 추세(연평균

5.5%)와 동일한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

[표 20] 향후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지출액 추정: 2024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
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 영세율 연장 시 조세지출액	23,502	24,796	26,162	27,602	29,122	30,726	32,418

❑ 최근 추세를 반영하여,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 연장 시 조세지출액을 2025년 772억원 등으로 추정

○ 최근 어업용 기자재 조세지출액은 2021년 784억원, 2022년 794억원, 2023년 772억원 등으로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

[표 21] 최근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지출액(추정치): 2019~2023년

(단위: 억원)

	2019	2020	2021	2022	2023	연평균 조세지출액
어업용 기자재 조세지출액	794	715	784	794	772	772

○ 최근(2019~2023년) 조세지출액 증감 추세를 반영하여, 향후 추계기간 조세지출 규모는 최근 평균과 동일한 수준(연간 772억원)일 것으로 추정

[표 22] 향후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지출액 추정: 2024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
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연장 시 조세지출액	772	772	772	772	772	772	772

(3) 추계결과

❑ 농·축산·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30년 말까지 5년 연장할 경우 부가가치세수는 2026년 2조 6,933억원 등 2026~2030년 5년간 총 14조 9,888억원(연평균 2조 9,978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○ 2026~2030년 국세인 부가가치세(74.7%)는 총 11조 1,966억원, 지방소비세(25.3%)는 총 3조 7,922억원 감소 예상

[표 23] 농·축산·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농·축산·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(안 제10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)	−26,933	−28,374	−29,894	−31,498	−33,190	−149,888	−29,978
− 국세(74.7%)	−20,119	−21,195	−22,331	−23,529	−24,793	−111,966	−22,393
− 지방소비세(25.3%)	−6,814	−7,179	−7,563	−7,969	−8,397	−37,922	−7,584

Ⅳ. 부대의견

❑ 없음

Ⅴ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김효경	박연서
세제분석1과	박성은	박연서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효경	02−6788−4647	hkkim@assembly.go.kr
박성은	02−6788−4668	ixsepark@assembly.go.kr
박정환	02−6788−4835	jhpark83@assembly.go.kr